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현행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30일(현행 9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현행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현행 최장 33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II. 검토의견

□ 신속처리대상안건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

개정안 제85조의2제3항 단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¹⁾ 지정일 등²⁾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1)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제18대 국회 말(2012.5)에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2)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을 포함

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을 통해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19대~제21대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기간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평균 43일을 상회³⁾한 점 등을 고려,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분한 체계·자구 심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음.

<표 1> 제19대~제22대국회 가결 법률안(위원회안, 대안 제외)의
평균 심사기간

구분	가결법률안 건수	전체 평균 심사기간	소관 위원회	
			심사기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제19대 국회	6,149건	311.9일	261.1일	43.3일
제20대 국회	7,346건	309.5일	258.9일	46.3일
제21대 국회	7,707건	303.5일	252.2일	47.7일
제22대 국회	4,407건	235.3일	198.3일	21.4일

주) “평균심사기간”은 법률안이 접수된 날부터 본회의 처리일(대안반영폐기의 경우 대안의 본회의 처리일, 수정안반영폐기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입력한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 “소관위 심사기간” 및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처리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함

* 자료: 국회사무처

3) 제22대국회는 개원 후 2년 여가 지난 시점이라는 특성상 2년 이상 장기 계류 법안의 처리실적이 계산되지 않아 제19대~제21대국회의 평균 심사기간과 비교할 때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구수정사항은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안건유형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원리에 맞게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항 본문(고유법 심사)에 따른 기간과 제3항 단서(체계·자구 심사)에 따른 기간을 구분하였음(수정의견 및 주서본 참조).

<표 2>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 ④ (생략)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 ----- -----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 ----- ----- ----- -----

부의된 것으로 본다.		----- ----- ----- -----
-------------	--	----------------------------------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